

제43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3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1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21.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2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3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3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34.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35.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36.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37.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0)
38.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39.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40.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4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44.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4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4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4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5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8)
5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9)
57.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4)
5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5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7)
6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2)
6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5)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2)
6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6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4)
6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4)
6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9)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6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7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2)
7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4)
7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0)
74.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7)
7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9)
7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7560)
7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2)
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2)
7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3)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5)
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4)
8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8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4)
8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2)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034)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1)
8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4)
9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9)
91. 향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8)
92.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5)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7)
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6)
9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4)
96.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9)
9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6)
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9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10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8)
10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6)

10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3)
103.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6)
10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10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6)
1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5)
10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5)
108.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1)
1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5)
1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6)
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8)
112. 현안 보고
 - 중동 전쟁의 농업·해수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
2.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10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10
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10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10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10
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10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10
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10
1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1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1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11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11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11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11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11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11
21.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11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11
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11
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11
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11
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1
2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11
3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11
3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11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3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11
34.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11
35.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11
36.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11
37.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0)	11
38.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11
39.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12
40.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12
4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12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2
4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2
44.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2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12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12
4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12
4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12
4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12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12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12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54.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20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5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8)	22
5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9)	22
57.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4) ..	22
5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22
5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7)	22
6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2)	22
6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5)	22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22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2)	22
6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22
6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4)	22
6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4)	22
6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9)	22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22
6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22
7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2)	22
7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4)	22
7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22
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0)	22
74. 햄프산업 육성 및 햄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7)	22
7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9)	22
7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0)	22
7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2)	22
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2)	23
7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3)	23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5)	23
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23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23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4)	23
8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23
8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4)	23
8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2)	23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034)	23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1)	23
8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4)	23
9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9)	23
9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8)	23
92.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5)	23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7)	23
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6)	23
9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4)	23
96.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9)	23
9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6)	23
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23
9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23
10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8)	23
10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6)	23
10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3)	23
103.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6)	24
10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24
10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6)	24
1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5)	24
10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5)	24
108. 한국수산물진흥공사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1)	24
1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5)	24
1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6)	24
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8)	24

112. 현안 보고	26
- 중동 전쟁의 농업·해수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그동안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며 최근 중동 상황 전개에 따른 농업·해수 분야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회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베트남 해외출장으로,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장관을 대리해서 참석하느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하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어기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을 문대림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1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21.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2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3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3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34.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35.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36.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37.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0)
38.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285)

- 39.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 40.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 4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4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 44.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 4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 4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 4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8분)

○위원장 여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3항까지 5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준병·조경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여기구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의 각종 의사진행이라든지 또 법률안 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난 21일 날 사실은 농협 조합원들, 조합장들 포함해서 2만여 명 가까운 많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중앙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농협을 좀 더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률안들을 제시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행 여러 가지 농정 정책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187만 농민들 직선제로

바꾸자 또 중앙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합과 관계되지 않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열어 놓자는 것도 들어 있었고요. 외부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장관이 한 사람을 내고 중앙회장은 2명을 내고 변협회장이 1명을 추천하고 또 회계사회가 추천하고 이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합과 관계없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운영비는 모두 중앙회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식의 중요한 개혁 법안 내용들이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법안 자체가, 오늘 같은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적이 없는 내용들이 소위로 회부가 됐다고 그러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조합의 관계자들이, 자기들과 직접 관계되는 법률안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과 어떤 제대로 된 의논, 교환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게 논의가 됐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회의에서 단 한마디 설명이라든지 그 내용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바로 소위로 직회부됐느냐 이 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제출했던 농지법,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역의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 농지법 자체는 무려 1년 반 전에 소위에 회부가 됐지만 불과 며칠 전에 한 번 논의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위원회 법안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위원장 어기구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충분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의원들이 제시하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농협도 개혁해야 되겠지요. 농지법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아니면 최소한 제시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 텐데요. 이따 현안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만희 위원 그것 이상 더 현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따 현안질의가 별도로 있으니 그때……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법안소위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와 최소한의 공평성은 지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은 이것 법안 심사 완결하고 현안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과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9건의 법률안에 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3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김소희 의원, 김성환 의원, 문금주 의원, 민형배 의원, 주철현 의원, 서왕진 의원, 임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관련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업 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농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정책자금의 지원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정 의원, 김정호 의원, 김선교 의원, 임미애 의원, 임호선 의원, 문금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료 의무화하고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농지조사원 및 토지 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적 이해 증진, 하위법령 제정, 농지은행 인프라 구축 등에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로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양수 의원, 이만희 의원, 임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재량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시행계획 외에도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일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이력번호 허위표시와 미표시 중 허위표시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식품 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 ‘차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총허용어획량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근해어선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전재실적·양륙실적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연근해어업자에 대한 어획확인서 및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광규택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항만공사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공사의 위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 장동혁 의원,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조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저희 소위에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논의 과정에서 전통주산업진흥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전통주산업진흥원이 이번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이 부분이 빠진 채로 지금 대안을 의결 요청을 드

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통주산업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케의 경우에는 한 120년 전에 이미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 있고 와인 같은 경우도 이미 2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K-푸드의 중심에 우리 전통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일부…… 지금 현재 정부기구에서 그런 임무를 일부 한다고는 하는데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통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경주엑스포라든지 각종 국민 방문 시에는 전통주가 공식 만찬주라든지 건배주 같은 경우에 쓰이는, 그게 이벤트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이번 통합 조정안 대안에서 빠져 있다면 계속심사를, 두고두고 미룰 것이 아니라 다음 소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논의해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소위원회에서 전통주 진흥을 위한 산업진흥원 개설 관련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해운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보조항로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어찌고다 동의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항여객선들의 운항과 관련해서 사실상 흑자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적자 노선이 대부분이고. 또 선사에 위탁을, 운항을 맡기다 보니까 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여객선도 지금 대중교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체를 대중교통화해서 국가에서 결손금을 책임지는 이런 보조항로…… 아까 뭐라 그랬더라, 그렇게 좀 바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지금은 민간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 위탁을 맡기게 되면…… 여기 보니까 근거로서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제가 여수시장을 하면서 겪어본 건데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공직자 내지 준공직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기관 운영의 경직성도 생기고 신분도 보장해야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쩐다 저쩐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반드시 예상대로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관련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정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전면적인 공공기관 위탁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요. 현행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시지 말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기관 위탁을 점진적으로 점검을 거쳐 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 신중한 집행과 사례 깊은 점진적인 진행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걸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하여튼 모든 내항여객선과 관련된 적자 항로에 대해 지금은 지자체들이 대부분 다 보조항로로 지정 안 되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 같이 한다든지 전액을 보조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갖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국**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 3건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5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규정부터 제25조(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6조(감독) 규정부터 제30조(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의 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실태조사) 규정부터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규정부터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까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의 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입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부터 제4장 제5조(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규정부터 제21조(포상금 지급)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22조(출입·검사 등) 규정부터 제26조(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정안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수정안과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및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1항까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0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7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2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2항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5항 지속가능한 연근

해어업 발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3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10)

(10시33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전사업의 허가 및 사후 관리, 지원 시책 등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이 현장에서 질서 있게 확산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농지조사원,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계기에 농지 수요·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농촌지역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지역 보유 자치구의 농촌 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민생법안도 속도감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2개의 제정법안을 포함한 4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 연관산업 육성 등을 본격화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존의 복잡다단한 투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탄탄히 보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친환경 스마트 항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정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8)
5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9)
57.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4)
5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5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7)
6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2)
6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5)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2)
6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6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4)
6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4)
6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9)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6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7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2)
7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4)
7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0)
74.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7)
7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9)
7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0)
7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2)

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2)
7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3)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5)
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4)
8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8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4)
8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2)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034)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1)
8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4)
9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9)
91. 향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8)
92.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5)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7)
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6)
9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4)
96.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9)
9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6)
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9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10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8)
10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6)
10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3)

103.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6)
10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10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6)
1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5)
10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5)
108.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1)
1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5)
1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6)
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8)

(10시38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111항까지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농림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공개, 이동제한 제도 등을 정비하고 중대한 방역 규정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7항까지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잦은 품질인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성과평가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인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인 수익의 추가 배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실경작자 소유 전환, 공공농지 확대 등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체계를 강화하며 공공농지 확대를 통해 농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법률상 식량주권 개념이 다소 불명확한 점 또 농지 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농지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과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11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수칙 준수 의무 및 항만안전평가제도 그리고 항만안전수칙 위반 시 출입정지 명령 및 사업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중 출입정지 처분은 제재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분리배출 시설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산물분리배출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동집하장 등 수산물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수산물분리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의 개정안 중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의 안내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90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분야 및 산림청 소관 법률안 검토보고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요건 충족 시 농지를 타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 등 3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 규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 청취 후 현안질의와 함께 대체토론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2. 현안 보고

- 중동 전쟁의 농업·해수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10시44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2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해 농업용 요소, 나프타 등 영농 필수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국내 농업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요소의 가격은 전쟁 이후 약 74% 상승하였습니다. 농업용 기름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은 약 6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 농업 생산비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수입단가도 오르는 등 우리 농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과 상설팀으로 중동 상황 총괄대응팀을 구성하여 일일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응단 내에 8개의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일일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

습니다.

또한 농자재, 원예, 식량 등 분야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영농철 필수농자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을 파악하여 지역 간 물량 조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야별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선 비료는 현재 완제품 재고량 3만 1000t과 원자재(요소) 확보량 8만 5000t을 감안하면 7~8월까지 요소 사용 비료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비료의 97%는 농협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요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조정하여 수급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전년도 월별 공급 및 판매 실적을 고려하여 완제품을 공급하면서 재고 점검 후에 완제품이 부족한 조합에는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다시비 관행의 개선과 축산분뇨의 활용 확대를 통해 무기질비료의 대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지원단을 통해 과다시비 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 비료 처방 바로 확인 서비스, 액비 당겨 살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비료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으로 확보해 주신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과 원료구입자금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지원 등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멀칭필름은 농업 현장에서 봄철 영농 수요분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하우스필름도 전년 동기 수준 이상으로 공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경우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인한 원료가격 상승, 공급물량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지역농협과 민간 판매상의 54%는 전쟁 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46%는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주요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와 제품에 대한 재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조합 등에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일정과 규모, 전년 구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농가 대상 판매물량도 제한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 필름의 공급 중단 등 긴급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료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면세유와 사료입니다.

면세유의 경우 중동전쟁 전과 비교해 경유는 33%, 등유는 24%, 휘발유는 26%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농가의 난방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조하여 농업인의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사후 환급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면세유 가격안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료의 경우 국제 유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해상운임과 곡물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와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한 농가 사료구매자금과 업계 원료구매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사용과 농식품 부산물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국산 원료 활용 확대와 함께 축종별 표준 사료 급여방안에 대한 교육·홍보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44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동전쟁과 관련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쪽, 중동전쟁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입니다.

4월 23일 07시 기준 호르무즈 내측에 우리 선박은 26척이며, 국적선원은 외국적선 탑승 선원 37명을 포함하여 총 163명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선, 연안여객선 및 연안화물선의 조업 및 운항 비용 증가는 추후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물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해운 운임은 중동전쟁 이후 급등하여 수출입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망, 부표 등 나프타 공급 영향 품목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기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대응 경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분야별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 안전과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가 인상 등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해양수산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운항 결손금 지원, 유류세 보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와 연안 화물선·여객선이 사용하는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국적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선원 전담 창구 및 외교부-선박-선사와의 실시간 소통망을 구축하여 선원과 선박의 애로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박별 비상계획에 따른 국적선원의 안전한 하선을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호르무즈해협 운항이 재개될 경우 국적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해협 통과를 돕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사우디 안부항 등 호르무즈 대체 항만을 입출항하는 원유운반선에 대해서도 상시 운항 모니터링 및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물류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과 연안여객선 운항결손지원금 증액 등을 통해 연안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하여 원유운반선을 사우디 안부항에 대체 투입 중이며, 컨테이너선은 오만 소하르항 등 호르무즈해협 외측 항만에 하역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국적 외항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무담보 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연안선사에 대해서도 무담보 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산 분야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어선어업인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영자금 용자를 확대하여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도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비축물량 적기 방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나프타 기반 제품인 어망, 부표 등의 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80%를 상반기 내에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저부터입니까? 질의 순서를 안 알려 주니까……

○윤준병 위원 질의 준비가 안 돼서 의사진행발언부터……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요. 윤준병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간사님이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 간에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우려사항 겸 당부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 올린 것처럼 의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은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소위 의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협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입법안인데 왜 이게 본 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소위에 직회부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4월 14일 날 소위에서 농협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사일정에 포함돼서. 그때 이미 상정돼 있는 농협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들과 연계돼 있는 사안이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합동해서 심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심사를 못 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합장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조합장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시정하고 또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입법안에 담겨 있어서 당연히 그 내용으로만 보면, 조합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볼멘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많은 부분들이 실제 좀 다르게 와전되거나 이런 게 들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입법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조합이 제대로 된 자정기능이나 자율적인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이번에 담으면서 감사기구…… 원래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권에 기해서 조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감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기구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서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입법안에 담겨 있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조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조합장들에 의한 직선제이다 보니까 조합장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이거나 또는 선거 과정에서 소수이다 보니까 금품과 관련된 내용이 수반되고 금품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으로 입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비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조금 와전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하고 또 조합원 자격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입법하는 과정에서 담으면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불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소위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와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라도 빨리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많이 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녹여서 함께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간사님.

○김선교 위원 농협법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속 입법 처리가 됐을 때 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농협에 관계된 일들이, 하루아침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는 건데 그런 것을 절차 없이 우리 농해 소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이 법안 갖다가……

농협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숙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협 개혁 법안이 요즘 핫한 이슈인데요. 두 분 간사님들께서 자주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인 농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또 단위농협 조합장님들 우려도 많으니까 목소리 듣고 해서 합리적인 농협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윤 간사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김선교 간사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고 안건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당 위원님, 간사님으로부터 듣는 얘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건이든 일정이든 거의 일방적 통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농협 관련된 개혁 법안들이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직회부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상으로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이 농협 개정법안들은 그런 일반적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67년 농협 역사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에 정치의 어떤 세력들이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정부의 관치 농협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무수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전체회의에 한 번 상정조차 없이, 제안설

명 한 번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농민들을 대하는 이 정부의 스탠스가,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지전수조사 문제는. 이게 과연 투기 근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농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농협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농협을 한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두 분 간사님들이 많이 만나서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오늘 아마 절반의 법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 나머지 후속 농지법 관련 논의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농어업회의소법도 꼭 전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힘을,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농림부·해수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농어촌 현장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생산비 폭등은 아까도 다 나온 얘기고 물류도 대란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 쪽만 여러 분들이 보다 보니까……

차관님, 소비자심리지수 보니까 올 2월 달에는 112, 3월은 107인데 이번 4월 들어서 대폭으로 떨어졌어요, 99.2. 이게 아무래도 고물가·고유가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 이어서…… 노지채소류 값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대폭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생산 부분만 보고 소비 부분을 등한시한 것 아닌가, 업무보고를 봐도. 그래서 좀 균형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있던데 가축분뇨 액비 관련해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노력들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닌 전략자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들을 농림부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그리고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칭찬할 게 있는데 한 연구원이 깊이거름주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깊이거름주기를 해 보니까 수확량은 늘고 잡초는 줄고 또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앞으로 멀칭필름을 안 써도 되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서 이런 노력들이 저는 계속 장려돼야 되고 보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비가 폭등한 부분에 대한 지원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해수부에서도 보

고를 주셨습시다만 지금은 더 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덜 갚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해 준달지 금리인하를 해 준달지 이런 노력들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에 위원님 추경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출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지금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소한 거지만 농협에 유류취급소가 있잖아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트랙터나 농기계가 거기서는 직접 주유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뭘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직접 기름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까운 기름이 잘못하면 새 나가고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당분간은 유류취급소에서 직접 주유가 가능할 수 있게끔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운기 같은 경우도 전기트랙터 이런 부분들로 전환하는 노력들도 같이 해 줘야 되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로 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또 노후된 부품들도 새로운 부품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기에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유류비 지원 관련된 문제예요. 사용처 제한되는 것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차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서삼석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일이 아니고 전에도 다 반복된 거였는데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지…… 특히 섬지역은 방법이 없어요. 농협주유소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못 쓰게 한다는 것 이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취지가 무색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구먼.

그다음에 양파가격 문제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관측하는 게 빗나가 가지고 시장에 혼선을 줘서 생산자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농림부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정부도 책임 안 지고 시장도 책임 안 지고 오롯이 생산자들한테만 모든 피해의 책임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 계기로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고.

산지 폐기 신청 물량도 확대해야 되고 관련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하기는 했지만—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데—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

○서삼석 위원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장관님, 여객선사들 손실 보상해 주는 것 좋은데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거예요.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이동에 불편을 갖는 그런 섬지역 주민들한테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라도 갖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예산들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여객선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항이 축소되는 여객선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 동의하에서 받드시, 축소를 하게 된다면 주민 동의를 얻어 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운항 축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미 금년 3월 1일부터 운항 축소 현황이 선사별로, 시도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늘어날 텐데 그런 추경의 지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현지인들, 이용객들 또 선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이번 추경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원양업계, 선박용 가스오일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지원이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영세 소형어선도 마찬가지이고 또 양식장 면세회발유 가격, 양식장 전기료 인상분도 지원이 지금 없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천호 위원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사실상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다른 형태의 예산 지원 아니면 다른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지금 추정 최종 예산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액수, 꼭 우리 농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농가 면세유, 농기계 3종 면세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이 부분인데 토털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농지조사 비용은 전액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농지조사 이 부분을 보면 자격 요건, 공고문을 보면 만 18세 이상 누구나 지역 관계없이 가능한 단기 기간제로 지금 모집을 합니다. 공고가 돼 있어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요강을 보면, 지금 5000명이 각 지자체별로 배분도 안 돼 있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의 누군가가 지원, 도시 근로자가 지원해도 되고. 도시민, 서울에 계신 분도 지원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제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또 어려운 농정 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서 580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정말 필요한 농정의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지원해도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별로도 배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림부에 편성한 추경을 어떻게 집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부계획이 있나 하는 걱정이 제가 많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요.

아니, 농사에 필요한 예산은 탁 자르면서 농사하고 전혀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고 농촌 일자리 창출하고도 크게 관계없어 보이고 지원자도 도시민이 지원해도 괜찮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쟁 추경예산이라 하고 폭풍우 추경예산이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 전쟁 추경예산, 폭풍우 추경예산에 맞는 취지의 농지전수조사 비용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소비용이 많이 올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서천호 위원 동남아산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74% 정도 올랐는데 퇴비·액비의 활용을 확대하는 그런 지침을 지금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장 상황을 전연, 동떨어진 짓입니다. 무기질비료 20kg 1포대면 300평 논이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퇴비를 하려면 100포대를 넣어야 돼요. 2000kg를 넣어야 됩니다, 2000kg. 자, 이게 어떤 현상인 줄 압니까? 300평에 2000kg를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환경오염까지도 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또 토양의 산성화 부분도 가중시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무기질비료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공급 대책을 늘리든지 해서, 그냥 탁상행정하듯이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이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서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액비라든가 무기질비료는 비료의 보조제 성격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늘로 54일째인데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요. 급한 부분부터 속히 보완을 해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식품부차관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에 대한 할당관세 배정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듣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농식품부하고 산업통상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올해 농업용 폴리에틸렌 물량으로 배정한 1만t은 실제로 보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일반적인 배정량인 것 같습니다. 좀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배정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기업에서, 할당관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업들은 주로 고품질용으로 해서 농업용 비닐(폴리에틸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산업과 관련된 폴리에틸렌이어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농업용 비닐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산업부하고 농식품부가 상의를 해서 이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적용 배정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요. 산업부하고도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당장은 비닐이 부족하지 않다, 계절별로 다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꼼꼼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장관께서 ‘화학비료를 좀 줄이고 국산 유기질비료 사용을 늘리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 액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제로 보니까 살포량, 살포 지역 등 액비 사용 규제가 여전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퇴비나 화학비료와 달리 액비만 시비처방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비처방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작물 요구량의 30%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퇴비나 화학비료처럼 시비처방서를 그냥 참고용으로 이용하고요. 충분한 액비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농촌진흥청이 와서 저희 사무실에 보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액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기준을 바꾸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차관님께서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두 달 전에 이미 가축분뇨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동상황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바꿀 것은 시비처방서 중의 일부, 이런 것들 바꾸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요? 아직 적용이 안 된다고 농민들께서 말씀하시던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며칠 전에 저희들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질문할 거 알고서는 그런 처방 하신 거세요?

(웃음소리)

좀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절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중동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 신속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영농형 태양광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든지 탄소 절감을 위해서 농업용 히트펌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비가 좀 비싼 부분들이 있긴 한데 축사라든지 시설원예에 대한 난방비가 70%까지 절감되는 등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예산도 절감하면서 농축산농가에 이 부분들이 잘 전수가 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 안 되는 부분은, 정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의 사례를 보면 기업하고 농업인하고 결합해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결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적용시키는 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해수부장관님, 지난 추경에 호르무즈해협에 봉쇄된 우

리 중소선사 피해지원 예산 14억 원이 포함됐는데 이거로 충분해요, 지원하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충분치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돈으로는 보험료 부분이 충분치가 않아서, 일단 해양진흥공사에 여러 가지 정책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대책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농지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월 중에 착수를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다음 달 같네요, 임박 시한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실태조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말씀하신—위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위법행위 등을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려는 그게 목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두 가지 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만희 위원 투기 근절을 위한 것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소요실태라든가 이용실태를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역을 분리해 가지고 본다는 얘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농지 문제, 농지전수조사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농지 문제를 하나의 부동산의 문제와 연결시켰고 또 여전히 농지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과 처분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가의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개념을 제가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가 기본적으로 처분명령,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국민의 재산권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저는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세력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촌의 실태를 현장에서 봤을 때 상속받은 농지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

다. 또 한 가지는 고령화된 농민들께서 이제는 대부분 자기의 농지들을 임차 형식으로, 농지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과정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임차인에 대한 또 고령농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예상치 않았던 불이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먼저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역을 구분한 농지제도를 관리하자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수도권 인접 지역에 대한 투기우려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기세력을 막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9개 인구소멸·농촌소멸 지역에 대한 농지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놓고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계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농지 활용에 대한 활용도도 더 넓혀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정책의 방향에 혼선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면서…… 왜?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농형 태양광들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정책의 방향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지 실태를 파악하더라도 농지를 좀 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기계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정책적 방향을 꼭 좀 짚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화·기계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동영농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책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매년 15.8%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적발된 문제성 있는 농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처분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농지의 수량만 하더라도 4989ha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도 제가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지 관련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잘 유념해

서 농지정책 잘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농지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의 모든 농지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 달라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농지의 규모화를 위해서 직접 교환·병합을 할 수 있는 농지관리기구의 구성을 빠르게 추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농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파종하는 시기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석유화학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배할 때 멀칭 들어가는 비닐, 하우스에 쓰이는 비닐, 비료 그리고 유통에 쓰이는 모든 자재들이 모두 다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위기가 생길 때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시설하우스 농가 중에 가온 농가가 3만 8720농가예요. 확인된 것만 이런 거예요. 면적으로 치면 5만 5000ha 중에서 가온 면적이 2만 1000ha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유류 난방, 그러니까 등유나 경유에 의존하는 농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경영비가 상승하는 거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소비가 잘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지열난방, 공기열 방식이든 지열 방식이든 소위 히트펌프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유류과동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히트펌프 보급률이, 해마다 30ha 정도를 보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전체 하우스 농가, 그것도 가온이 필요한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그 면적이 0.14%밖에 안 돼요.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할 때는 비용이 조금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히트펌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30%를 해마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데 전기농기계 보급에 농식품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운반차, 리프트카 이런 것 다 전기농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한테 맡기면서 전혀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후에너지부와 이야기할 때 기후에너지부는 이 문제를 ‘농식품부가 요구하면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졌는데 농식품부가 이것에 소극적이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제가 농기계 소음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들에 하루 종일 농기계 틀어 놓으면 노인들 다 귀먹어요. 난청 환자 돼요, 나이 먹으면. 그러니 이것 좀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전기농기계 보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

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나프타 가격 폭등하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나프타 원재료의 배정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쪽으로 많이 쏠려 가면서 농자재의 원료로 쓰일 나프타의 원료 공급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양파가 생산이 될 텐데 양파망으로 쓰일 이것도 제대로 원료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 7월에 출입국관리법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모집공고를 올 4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것에 응모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임미애 위원 이것 답변 들어야 돼요.

○위원장 어기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모집공고, 안 하실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사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대정부질의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농식품부가 이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농식품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농정원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차관님, 중동 상황 관련해서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단장은 누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단장님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장총괄대응단은 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국장들……

○임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지역신문 월요일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장날 나왔지만 없네요. 농자재 재고 바닥, 농촌 비상’, 이게 저희 음성 지역 실제 농자재마트 대표시거든요. 저희 음성이예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음성이 고추 주산지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현장지원단장님이 보실 때 멸칭필름 제대로 구입·구매 가능하다고 보sey,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농업인들께서 대부분 봄철에 하는 걸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임호선 위원** 오늘 아침이예요. 제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임호선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일부 농협에서 부족한 경우가 어제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막 팔고 계신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구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기왕 말씀하시는 것 하나 더, 요소비료…… 실제 엇그저께 저희 지역에서 첫 모내기 했거든요, 감곡에서. 그런데 논 모내기 할 때 비료 같이 살포하는데 비료 못 구한대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면에 계신 분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요소비료 구하기 어렵다, 똑같은 말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철이잖아요. 부직포 못 구한대요.

현장지원단장님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닐·비료·부직포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농업인들께서 봄 영농철에 상당량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비료의 경우에는 현재 전년 공급량보다 조금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비료의 경우에는 아마 농업인들께서 조창기에는 약간 가격이 오를 우려 때문에 가수요도 조금 발생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는, 3월 중순부터는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비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대응반을 통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면, 매일 저희들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제의 경우에도 일부 1개 농협에서 비닐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앙회에 재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공급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자, 보세요. 개별 농가의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드렸잖아요. 문제는 농협도 마찬가지로 농협경제지주 쪽에도 지난주에 문제점을 전달해서 해당 농협만의 문제인지—삼성농협을 얘기하는 거예요—아니면 인근 농협 다 체크를 해 보셨냐 그러니까 인근 농협도 농민분께서는 체크를 해 보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에까지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지원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역마다 전부 다 시비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만 현장의 애로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멀칭재가 없거나 부직포가 없거나 이렇다면 농사를 시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지 않게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맞춤형에 필요한 이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그냥 앉아서 하는 거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접수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물량 제한이 있다면…… 농사 얼마 지으면 적정 시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 농협에 애로 창구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애로사항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농협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접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저희 음성 쪽하고 피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추가 제대로 심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고추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긴급하게 점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농림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트럼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조승환 위원** 이란 때문에 고생이 많지.

○**조경태 위원** 물론 해협을 통제한 이란도 아주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쟁을 너무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트럼프 인기가 지금 보니까 33%인데 아마 11월 달에 공화당이 참패할 겁니다. 그게 아마 표로서 표심에서 드러날 텐데,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걱정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달나라를 미국의 우주선이 갔다 왔는데 아마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인류애를 좀 더 발휘하는 그런 평화적인 마음들, 상생하는 마음들이 현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비단,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지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

는데 위기 상황을 계속 촉발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에서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조경태 위원 지금 비료요소 가격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최근 YTN의 보도에 보면 이미 공급 가능량이 수요량보다 1120t이 부족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공급 부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4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조경태 위원 5월·6월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조경태 위원 그리고 일본은 1963년부터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빨리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재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사료안정기금 부분은 각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정리해 주신 필수농자재법을 상당 부분 대안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경태 위원 하여튼 사료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비료 공공비축이 지금 한 달 분량 정도 되는데 90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제를 즉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금 어업용 경유가 폭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미 리터당 810원을 넘어서 지금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원래 880원에 저희가 면세경유를 줬는데요. 1380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1234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셔서 영세 어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나프타에 대해서 해수부 쪽에, 나프타가 어민들한테도 많이 사용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어망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프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농림부에 비해서 해수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좀 더 잘 업무를 살피셔서 나프타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어민들, 어업하는 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좀 더 크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마 위원님께 제출드린 자료에 좀 부실하게 나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어업인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애로사항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미국·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올해 9월 5일부터 11월 4일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해서 장관님하고 차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언급하시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빈틈 없는 점검과 지원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서 16일에는 김민석 총리께서, 20일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여수를 직접 찾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이고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고 또 작년에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산림청에서는 주행사장의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수부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부 업무 분장상 유인섬은 행안부 소관 사항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섬박람회 하게 되면 섬의 접근성 개선이 최고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섬 주민들의 생업인 농업과 어업 또 문화관광업과 관련된 것들 또 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 하게 되면 농식품부하고 해수부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해수부가 관장해야 되고 특히 해수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섬들을 많이 방문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운임 지원 좀 해 주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해 주라고 12억 5000만 원 작년 예산에도 포함시키라고 여러 번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고요. 또 총리 방문 현장에서도 행사장 해상운송을 위한

규제완화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거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저희가 너무 위원님께 죄송한 게 예산을 다 반영을 해서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반영이 안 돼서 예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러 가지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관련 예산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할애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0일도 안 남았거든요. 해수부 차원에서 좀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사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송미령 장관께서 하겠다고 하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차관님, 뭘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섬박람회 사무국하고 한식·전통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께서 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주철현 위원 그래서 좀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주철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작년의 잼버리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바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해수부와 농식품부가 조금 더 자기 행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울러서 무기질비료와 관련돼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초기에 가수요로 인해서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많이 수요가 부족, 판매량이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남해화학 등과 관련된…… 저희가 원료가격을 반영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가격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빨리해서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현실화시킨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만 가수요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앞장서서 비료가격을 빨리 인상된 원자재를 반영한 가격으로 인상을 해 주고, 나머지 인상분의 80% 이상은 다 지원해 주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해야만 가수요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빨리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농협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하고 농식품부에서는 하여튼 가급적 이 달 안으로 섬박람회와 관련된 구체적 지원계획 세워서 자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이 있는 중구, 태종대를 품은 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해서 50여 일 이상 우리 선박 26척, 우리 선원한 160여 명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 피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여기 피해지원에 14억 담겨 있습니다, 추경에. 아니, 소비쿠폰 농림부 500억, 해수부 300억—내가 지금 추경에 추가시킨 것만 이야기합니다—기본소득 700억, 농지조사 그것도 한 700억 되지요. 이렇게 막 뿌리는 예산 막 만들어 놓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 14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국회에서 보낸 148억도, 상임위에서 보낸 148억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14억이 도대체 어디에 쓸 돈이에요?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14억은 일단 중소 선사들 보험료 부분을 좀 지원하는 걸로……

○조승환 위원 이차보전이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일단 직접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14억 가지고 보험료 직접적인 지원이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많이 부족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서 할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조승환 위원 그 해양진흥공사는 지원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보증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금융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용선료라든지 전쟁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중소 선사에 맡겨 놓고 이 회사들이 그냥 감당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중소 선사가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 선상에 있는 163명 우리 국적선원들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단순히 부식이나 또 전기 돌리고 보일러 돌리고 하려고 그러면 기름 들어가니까 그게 원료유냐, 그게 3주치냐 4주치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게 고립돼 있는 환경의 장기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더군다나 선상이라는 것은 지금 다 다국적선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 다국적선원이라는 것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명령체계가 있는 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원들하고의 직접 통로라든지 이 사람들의 정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당대표 모시고 강원도 수산항하고 남해안 갔다 왔는데 정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유가보조금 해서, 면세유에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한 드림이 16만 원 하던 게 27만 원대로 가 버린 거지요. 그런데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은 면세유는 이미 받은 것이고, 면세유는 과거부터 이미 받아 온 것이고. 최고액을 기준으로 따져도 2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7만 원짜리 기름 한 드림 사는 데 10% 정부에서 깎아 주고 있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전혀 어떤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 단백질의 최후의 보루가 바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근해어업 생태계가 정말 위협에 처해 있다, 이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귀여한 청년들, 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극항로가 호르무즈해협의 대체항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어느 면에서는 대체항로로서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대체항로가 될 수가 없지요. 장관님, 그것은 대체항로가 될 수가 없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은 대체항로가 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30년에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2030년에 활성화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시범항로가 5년간 하게 되면.....

○조승환 위원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기 항로가 2030년이 되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다음에 시범항로를 북서항로로 검토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북동항로가 되지 않는다면 북서항로도 같이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북서항로는 사실 다닌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

고 유병 문제라든지 해저 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각별히, 경제성도 더군다나 없고. 미국 도항 가는 항로잖아요. 그것은 경제성도 현재로서는 절대 나오지 않고 거기에 시범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했는데 북극항로 준비를 지난 정부에서는 미리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한참 시범항로를, 운항을 하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환 위원** 아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북극이사회 진출이라든지 북극다산기지 건설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북극해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북극해 연안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지역 주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겁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들 질의 남았는데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윤준병 위원** 5월부터 농지조사가 진행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윤준병 위원**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상을 파악하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농지, 소위 지주가 사망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든지 또는 중 중 소유인데 다수 지분으로 구분됐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임대차계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실상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합장들이 상경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앙회가 동원했다, 조직 동원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도 지원해 줄 요량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관제 데모를 중앙회가 하고 있다, 그것도 편법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농식품부가 제대로 점검해서 그런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빨리 서둘러야 될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중앙회 공동협력증진사업비로 일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집회 전에 저희들이 우려사항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라든가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지시한 바

있고요.

○**윤준병 위원** 자금도 그렇고요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서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요. 중동사태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도 마찬가지로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을 다 담보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역대 예산 추경 과정에서 이번에 5223억 원 반영된 내용은 큰 의미가 있는, 농식품 분야의 또는 해수부 분야의 배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뜰하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또 농민들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두 부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현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잘 점검해서 그 부분들이 조기에 보완이 되어야만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는 현장지원상황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제대로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국조특위가 운영되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장관께서도 국조특위에 기관보고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기관보고도 했고 증인으로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준병 위원** 고 이대준 씨와 관련해서 기관보고 할 때 북한군에 의한 피살·소각이나 또는 실족사냐, 어떤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경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해수부장을 지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해수부장의 전제조건은, 실족사라고 해서 해수부장을 준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윤준병 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은 저희 직원이 근무하는 중에 실종이 되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윤준병 위원** 거기 회의록을 안 보셨군요. 회의록에 보면 ‘실족사로 인정해서 여기에 의해 순직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유형이라고 봐서 순직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회에서는 일단 6월 달에 발표했던 해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부분을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실족사를 전제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제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두 지적을 했었어요, 사실.

이대준 씨의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 과정, 규정 준수 여부, 실족사로 판명한 근거, 순직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어떤 사유로 해수부장을 거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특히 이번 국조특위 과정에서 이 내용과 관련된 별도 증거도 없는데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국방부는 ‘새로운 사실이 없이 추가 발표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새로운 증거나 추가조사 없이 당시 윤석열 정권하의 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호가 보도자료를 찍찍 긋고 직접 수정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했고 그 안으로 해경과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해수부도 그 관련된 내용 전체를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지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다각적인……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어제 저희들이 대구에서 일단……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가의 비료·필름·면세유·사료 등 수급관계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과 현장에 가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희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해수부장관님,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쟁 추경이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막 몰아붙여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26조 2000억입니다. 정부의 제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시간이 열흘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해협 중의 한 가지가 호르무즈해협이고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 갯벌 배가 26척이고 관계된 갯벌 있는 우리 국적 국민들이 163명이라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의 정부제출안에서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상임위 통과하면서 148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 지원 최종안에 14억이 담겼어요. 합당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사실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있잖아요.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지급이 될 텐데 이것 쓰는 곳이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에는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면 실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상품권인데 30억 이상 매출을 내는 데는 못 해. 그러면 농촌 지역의 경우 농협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것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 알고 계시지요?’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계신데 대책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해서 작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하나로마트,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로마트의 한 30% 정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 8월에 일부 개정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금 농촌 지역에 농협주유소가 있는 경우 이게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대책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대책 세우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들, 선원들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동의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 같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바짝 우리 선박들, 선원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자재·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또 이 가격 안정에 정부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빈틈없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전쟁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90항까지 36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11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희용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선교 문금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청가 위원(2인)

박준태 전종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산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정책기획관 홍인기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식량정책관 정혜련
축산정책관 이재식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해사안전국장 이수호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북극항로추진본부본부장 오행록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상익
산림보호국장 이광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1)

이상 4건 3월 30일 회부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3월 31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이상 2건 4월 1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2)

이상 5건 4월 2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6)

이상 2건 4월 3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5)

이상 3건 4월 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6)

4월 7일 회부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8)

이상 4건 4월 8일 회부됨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6. 4.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5)

이상 4건 4월 10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6)

이상 2건 4월 13일 회부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이상 2건 4월 14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이상 3건 4월 15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0)

이상 2건 4월 16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0)

이상 4건 4월 17일 회부됨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4.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0)

이상 2건 4월 20일 회부됨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6. 4.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4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용혜인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8)

4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허영 의원·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8)

4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4.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4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1)

4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4. 14.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2)

4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1월 2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4)

1월 2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2)

이상 2건 2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2월 1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2월 1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2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2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3월 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이상 2건 3월 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3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3월 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3월 1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업회의소법안

(2026. 3.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3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전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전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이상 2건 3월 2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7)

3월 3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4월 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4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6)

4월 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4월 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4월 1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4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4.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4월 1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0)

4월 1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1	0	0	2	3	12	8
해양수산부	1	0	0	5	6	6	4
농촌진흥청	0	0	0	0	0	0	2
산림청	0	0	0	0	0	4	3
해양경찰청	3	0	0	2	5	3	0